

환경을 지키는 전화번호 128

바로 지금 눌러 주세요!!

mev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주변에서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발견했을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 경찰에 신고하여 환경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및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Ⅰ 신고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 유역(지방)환경청,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Ⅰ 신고방법

국번없이 전화번호 128만 누르세요!!

(휴대전화는 지역번호를 누른 후 128번을 누르세요)

128 전화 외 신고기관에 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고를 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했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및
배출·처리 시설 운영·관리 시 준수사항

2015년 가축분뇨법!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





본 자료는 가축을 사육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주요사항과 2015년 3월 25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축분뇨법 주요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고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지역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의 발생 및 처리

배출시설



용어 정의

- ▶ **가축** : 소, 돼지, 말, 닭, 젓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메추리, 개
- ▶ **가축분뇨** :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
- ▶ **배출시설** :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방목지
- ▶ **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
- ▶ **퇴비** :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
- ▶ **액비** :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 ▶ **정화시설** :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
- ▶ **처리시설** :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

가축분뇨법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법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시행 2015. 3. 25)	벌칙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주체 추가 (제2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지자체장이 설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주체에 농협조합을 추가 → 농가 지원 확대, 고품질 퇴·액비 생산·유통을 유도	-
생산자 단체 확대 (제2조)	생산자 단체 :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생산자 단체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을 추가 → 다양한 농업단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	-
가축분뇨 실태 조사 등 (제7조, 제7조의2)	신규제도	토지에 출입하여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조사 실시 → 조사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	조사 거부·방해 : 3백만원 이하 (제51조)

구분 (법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시행 2015. 3. 25)	벌칙
가축사육 제한 구역 확대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 1. 주거 밀집지역 2. 특별 대책지역 3.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 1. 주거 밀집지역 2. 특별대책지역 3. 수변구역 4.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 4대강 수변구역에 가축사육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의 수질보호에 기여	사육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설치 : 2천만원이하 (제49조) 미신고 시설설치 : 1천만원이하 (제50조)
불법시설을 활용한 위탁사육 금지 (제11조)	신규제도	무허가·미신고 시설에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하는 행위 금지 →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무허가 시설 위탁사육 :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제49조) 미신고 시설 위탁사육 :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제50조)
처리시설 설치면제 (제12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처리시설 설치 필요	처리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경우(바닥에 비닐을 깔고 왕겨 또는 톱밥 등을 일정 두께이상 도포 등), 처리시설 설치 또는 변경 면제 → 가금류 농가대상 규제 완화	-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의 기준 신설 (제13조의2)	퇴비·액비는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기준 준수	「비료관리법」 적용 제외 대상인 퇴·액비에 대한 품질·검사 기준 신설 → 양질의 퇴비·액비 생산을 유도	부적합 퇴·액비 생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3조)
처리업자 등의 처리시설 준공검사 실시 (제15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만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가축분뇨처리업자 및 재활용신고자도 처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법적용의 형평성 제고 및 처리업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준공검사 미이행 :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51조)

구분 (법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시행 2015. 3. 25)	벌칙
불법축사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신설 (제18조)	무허가·미신고 시설은 순수 사법조치	사법 조치 외에 사용중지, 폐쇄명령 신설,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신설 → 불법축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 ※ 소규모·한센인촌 시설 : '19.3.25 / 그외 시설 : '18.3.25(부칙 제9조)	폐쇄명령 미이행 :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제48조) 사용중지명령 미이행 :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제49조)
전자인계 관리 제도 도입 (제37조의2, 3)	신규제도	가축분뇨(돼지분뇨에 한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경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 ※허가시설: '17.1.1, 신고시설: '19.1.1, (부칙 제7조) → 가축분뇨의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관리대장과 일치·변경허가·신고 서류 작성 등을 대체,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인계내용 확인 미협조 :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51조) 전자인계 운영관리 미준수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3조제3항)
교육업무 지방이양 (제38조)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가축분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 지방자치 활성화	가축분뇨 업무 담당자 교육 미실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3조제3항)
축산환경 관리원 설립 (제38조의2)	신규제도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축산환경관리원 설치 →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청문 대상 확대 (제46조)	청문 대상 :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2.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3.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를 청문대상에 추가 → 취소처분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	-

구분 (법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시행 2015. 3. 25)	벌칙
벌금형 금액 조정 (제48조)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벌금형 금액을 징역 1년 당 1천만원으로 조정, 실효성을 제고	-
불법축사 양성화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무허가·미신고 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내의 시설도 타법상의 위법사항이 없고,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나 신고 가능 → 무허가·미신고 축사 양성화(개정법 시행 후 3년까지 유효) ※ 부칙 제8조 ('15. 3. 25 ~ '18. 3. 24)	-

허가대상 배출시설(시행령 제6조 관련)

배출시설종류	변경 전	변경 후(시행일 2015. 3. 25)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 500㎡ 이상)	현행 기준 동일
소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 200㎡ 이상)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	현행 기준 동일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 450㎡ 이상)	현행 기준 동일
닭·오리 사육시설	-	면적 3,000㎡ 이상

신고대상 배출시설(시행령 제8조 관련)

배출시설종류	변경 전	변경 후(시행일 2015. 3. 25)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 50㎡ 이상 500㎡ 미만)	현행 기준 동일
소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 100㎡ 이상 450㎡ 미만)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단,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등 :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	현행 기준 동일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현행 기준 동일
닭·오리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
메추리 사육시설	-	면적 200㎡ 이상
양 사육시설 (변경 후 부터 염소 등 산양 포함)	면적 150㎡ 이상	면적 20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면적 2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현행 기준 동일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양·사슴 50마리 이상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

➤ 주요 법률조항 내용정리

구 분 (법조항)	준수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벌칙 (징역/벌금)	행정처분	과태료
가축 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 의무 (제10조)	가축분뇨·퇴비·액비의 공공수역 유입 금지 ▶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수역 : 하천, 호수, 항만, 연안해역, 지하수로, 농업용 수로, 하수관로, 운하	최고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환경오염 방지 조치명령	-
허가 및 신고 (제11조 제1항, 제3항)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 무허가/미신고 ※ 허가(신고)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대상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배출 시설을 설치한 경우 1차 : 사용중지 명령 2차 이후 : - 허가대상 (폐쇄명령) - 신고대상 (사용중지, 폐쇄명령)	-
	신고대상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1차 : 사용중지 명령 2차 : 폐쇄명령	-	

구 분 (법조항)	준수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벌칙 (징역/벌금)	행정처분	과태료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1조 제2항, 제3항)	변경허가 ▶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변경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 변경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변경 변경신고 ▶ 허가를 받은 자로서 ●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미만으로 증설 ●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 처리시설의 규모 변경 ● 처리시설의 처리공법 변경(처리방법은 유지) ●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탁처리로 변경 (수탁자 변경, 위탁량의 100분의 30이상 변경 포함) ●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변경 ● 축종 변경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 폐쇄 ▶ 신고한 자로서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축종 변경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 폐쇄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1차 : 경고 2차 이후 : - 변경허가 (사용중지명령, 허가취소), - 변경신고 (경고, 사용중지명령)	-
액비 변경 신고 (제11조 제2항, 제3항)	액비 자원화시설 변경 신고 ▶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변경 ▶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	1차 : 경고 2차 이후 : 경고, 사용중지 명령	100만원 이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기준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 ▶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액비·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저장·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빗물·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만 해당) 1차 : 경고 2차 이후 : 영업정지	100만원 이하

	<p>퇴비화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퇴밥 등 수분조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p>액비화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액비저장조는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거나 액비의 비수기시 액비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p>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p>	<p>가축분뇨 무단 배출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p>허가대상 2년 이후: 2천만원 이하</p> <p>신고대상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p>	<p>개선명령 1차 : 경고 2차 이후 : -허가대상 (허가취소:2차) -신고대상 (경고,사용중지 명령)</p>	-

<p>액비 살포기준 (제17조 제1항 제5호)</p>	<p>액비 살포장소 및 살포기준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비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에 살포 ▶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 살포 금지 ▶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 금지 	<p>허가대상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p> <p>신고대상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p>	개선명령	-
<p>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제17조 제3항)</p>	<p>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 가축분뇨, 퇴비·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 처리시설로부터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성분,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다음 기간까지 검사 또는 분석,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 - 허가자 : 3개월(퇴비·액비화시설 6개월) - 신고자 : 6개월(퇴비·액비화시설 12개월) ▶ 정화시설은 처리시설 운영,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 축분 및 오니 처리 내용 등을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 ▶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p>개선명령,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만 해당) 1차 : 경고 2차 이후 : 영업정지</p>	100만원 이하